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 유)

제 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

1. 관련 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-453 (2018.01.17.)
2. 선물·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이 2018.1.17.자로 시행됨에 따라 권익위에서 송부해 온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기관 소속 직원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 개정내용	
가. 선물·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(시행령 별표 1 개정)	
나.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(시행령 별표 1 개정)	
다.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(시행령 별표 2 개정)	
라.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(시행령 제26조 개정)	
마.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(시행령 제42조 개정)	

3. 아울러 위 개정사항을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반영하여 주시고, 규정개정 전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귀 기관 내부규정 간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가강화된 내용으로 준수*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니,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[붙임3]은 교육부 공무원 적용 예시이며, 각 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내부 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바람

4.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해설집, 매뉴얼, 교육자료 등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*(www.acrc.go.kr)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부패방지-부패방지자료-청탁금지법-설명홍보자료

- 붙임 1.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.
 2.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.
 3. (참고)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 우선 적용 사항 안내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

고등교육기관전체, 국립대병원, 국립대학교, 국립대학법인, 국립전문대학, 국립초중고등학교, 기능대학, 기술대학, 대학법인, 대학원대학교, 대학원대학법인, 사립대학교, 사립전문대학, 사이버대학, 사이버대학법인,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, 전공대학, 전문대학법인, 소속단체

주무관	김지연	서기관	엄진섭	반부패청 렴담당관	전결01/18 임용빈
-----	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수신	담당	김효관	팀장	손판규	실장	이동형	총장	01/19 서길수
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

시행 반부패청렴담당관-465 (2018-01-18) 접수 법무감사팀-902 (2018.01.19.)
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/ www.moe.go.kr
 전화 044-203-6442 전송 044-203-6093 / zzoajy@korea.kr / 공개